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613-10



제 IX 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 I 권 |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
(장애인등록 등)

제 II 권 |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지역사회복지, 기타 복지 사업 등)

제 III 권 |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 IV 권 | 2022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제 V 권 |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제 VI 권 |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제 VII 권 |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제 VIII 권 |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제 IX 권 |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제 X 권 | 2022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제 XI 권 | 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04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 | |
|-------------------|-----|
| 1. 사업개요 | 303 |
| 2. 사업 수행기관 | 308 |
| 3. 교육 과정 운영 | 318 |



1 |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은 생애 한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기에 부모 역시 변화에 맞춰 양육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성인기 자녀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 강화 필요

나. 사업개요

- 목적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 사업기간 : 2022.1.1.~2022.12.31.
-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9.12.)은 (1)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2)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3) 성인권 교육지원을 명시

다. 서비스 대상자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라. 대상자 선정 절차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은 해당 지역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수행기관은 대상자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마.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 관련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영유아기 부모교육,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성인권 교육)

바. 제공기관

- 부모교육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사업계획에 따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제공기관으로써 역할 수행 가능)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 기능 |
|-------------------|--------------------|--|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 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
| 시·도 (특별자치시·도) | 사업 담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비용 지역센터로 교부 - 사업 수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지도·점검 실시) - 참여자 모집지원 |
| 사업 지원·수행 기관 | 중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지원·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및 세부사업 지침 수립·안내 - 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 - 사업 홍보 - 사업 집행 및 보건복지부로 최종 실적 보고 - 수행기관 모니터링 |
|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지원·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 수립(필요시 지역센터가 사업 자체 운영 가능) - 공모, 수행기관 선정 심사 - 사업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 사업 홍보 및 이용자 발굴 - 사업 집행 및 시·도로 최종 실적 보고(중앙센터 공유) - 수행기관 모니터링 |
| 사업 수행기관 | 선정기관 (필요시 지역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계획·운영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계획·운영 - 성인권 교육지원 계획·운영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사업집행 및 지역센터로 실적보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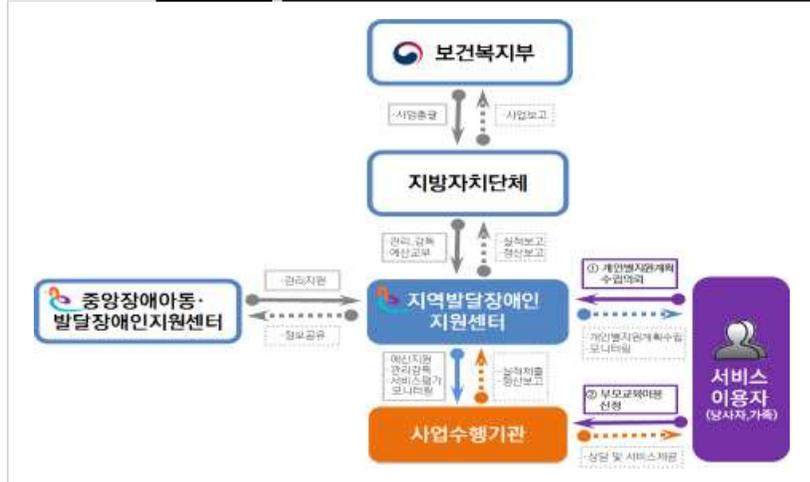
● 사업 개요

| 구분 | 주요내용 |
|----------------|--|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양육기술 제공(기본형), 심화교육(자율형) 운영, 자조모임형 운영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모의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형 프로그램, 멘토링형 프로그램 등 체험 위주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성인권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가족 등 보호자 대상 성인권교육 실시 |
| 사업기간 | 2022.1. ~ 2022.12. |
| 예산액 | 9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 사업 수행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광역 17개소)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에서 홍보(지자체, 지역센터 등 홈페이지 활용) • 참여자가 수행기관에 신청 |
| 참여자 확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완료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부모교육 참여자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과 연계할 수 있음 |
| 프로그램 실시 | 지역센터(*필요시, 지역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 가능), 수행기관 |
| 예산집행 및 비용정산 | 지역센터, 수행기관 담당자 |
| 돌보미 모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확보 - 돌보미, 유급 자원봉사자, 무급 자원봉사자 등 |
| 돌보미 지원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시 지원 - 발달장애인 2명당 1인의 돌보미 지원 가능 •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부모 및 보호자가 부모교육에 참여할 경우, 교육프로그램 수강시에만 자녀 양육 돌봄 지원 |
| 만족도 조사 | 수행기관 담당자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수행 |



● 사업 수행 절차(흐름도)

| 절 차 | 세부 내용 |
|-----------|---|
| ① 사업계획 수립 | 지역센터 1) 지역센터 연중 부모교육 계획 수립 → (시·도) 보고 2)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선정 |
| ② 계획 수립 | 수행기관 1) 세부계획 수립(돌봄지원 사항 포함) 및 운영 2)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 ③ 참여 신청 | 서비스 대상자 프로그램 교육 신청 |
| ④ 대상자 선정 | 수행기관 서비스 대상자 자격 기준 및 우선순위 등 확인 |
| ⑤ 사업 실시 | 수행기관 프로그램 실시 및 돌봄지원 / 참여만족도 조사 실시 |
| ⑥ 비용 정산 | 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
| ⑦ 결과 보고 | 수행기관 지역센터 수행기관 → 지역센터 → 시·도(특별자치시·도) → 보건복지부 * 지역센터 시·도보고시 중앙센터 자료제출 |



2 | 사업 수행기관

가. 수행기관 주요 역할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안) 구성·운영
 - 운영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권)
- 참여자 모집 및 선정
 - 다수의 참여자 신청 시 우선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 참여자(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가족, 돌보미 등) 관리 및 운영
- 돌보미 지원 : 돌보미 모집 및 배치, 사전교육(발달장애 이해, 돌보미 역할 등)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참여만족도 조사(서식 7의 붙임 3)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서식 7의 첨부 2)

나. 수행기관 자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협조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본 사업의 일부를 자체 운영 가능



다. 수행기관 선정

1) 선정 절차(수행기관 공모 운영시)

| 절 차 | 담당주체 | 내 용 |
|----------|------|---|
| 공고 및 안내 | 지역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공고 진행(일반인이 알도록 7일 이상 공고) -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안내 |
| ↓ | | |
| 신청 | 수행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을 지닌 수행기관이 지역센터에 신청 서류 제출 - 수행기관 공모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공통)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해당시)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해당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실적 등 |
| ↓ | | |
| 접수 | 지역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의 신청 서류 접수 및 검토 |
| ↓ | | |
| 심사 결정·통지 | 지역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평가기준 : 수행역량, 수행기관의 전문성, 계획의 적정성 등 * 가족휴식지원사업과 동시 공모한 기관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기관 평가에 따라 동시수행 가능 • 결과 통지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공모 등록, 수행기관 선정(구체적 절차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 참고)

** 지정취소 사유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지역센터 모니터링 결과 사업수행을 적절히 하지 않는 경우 등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매년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기간(최대 2년)을 정하여 수행할 수 있음

2) 선정 심사

유의

- 지역센터는 지역 내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기관을 단수 또는 복수로 선정 가능
- 지역 내 다수의 사업 수행기관이 선정 된 경우, 지역센터는 선정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실시

- 수행기관의 심사기준은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계획 타당성(70점)과 예산계획 타당성(15점)으로 구분하여 평가[붙임 2]
 - 수행기관 적합성 :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전문성 함양

-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 예산계획 타당성 :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지역센터는 수행기관 공모 선정 완료 후, 수행기관 선정통보[서식 4] 및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을 시·도(특별자치시·도)에 즉시 보고[서식 5]

라. 수행기관 업무

1) 계획 수립

- 수행기관에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프로그램 계획서[서식 3]를 작성하여 지역센터 보고
 - * 지역센터는 중앙센터로 사업계획서 보고자료 공유
 -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돌보미 연계사항 반드시 포함
- 수행기관은 교육과정별 대상자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모집 시 명확하게 제시 필요

참고 ▶ 교육과정 별 대상자 기준(예시)

| 교육 과정 | 발달장애인 자녀의 연령 | 참가대상 |
|---------------------------|--------------|---|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 만 0세 ~ 6세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 상담 및 코칭 | 만 12세 ~ 18세 |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
| 성인권 교육지원 | 전연령 |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형제, 자매 등), 관련 종사자(거주시설, 활동지원사 등) |

유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근거 교육과정별 대상자 기준을 제시함. 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지역센터와 필히 논의하여 일부 조정 가능



2) 서비스 대상자 모집

-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사업수행기관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 등)의 협조를 통해 참여자 모집 홍보를 실시하고 신규참여자 모집에 노력을 기함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신청서류, 문의처 등 정보 포함
 - 모집 공고 시 참여 자격기준 및 우선순위 대상자 자세히 안내
 - 홈페이지(지역센터 비로소 포함), 지역신문, 각종 계시판 등 게재 및 인쇄물 배포
 - 참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수행기관 방문하여 서면 신청이 가능[서식 6]
 - 수행기관은 참여자 명단[서식 7의 첨부 3] 작성 및 관리

예 ▶ 20○○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참여자 모집 안내문(예시)

20○○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 참여자 모집 안내

1. 목적

○○○○(기관명)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20○○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해당지역 명) 거주 발달장애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전문정보 및 양육기술 제공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간의 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을 돕기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교육안내

- 가. 일시 : 20○○. 4. 2.(월) ~ 7. 30.(금)
- 나. 장소 : ○○수행기관
- 다. 대상 : ○○(해당지역 명) 거주 발달장애자녀를 둔 가정 ○○명
(신청자가 많은 경우,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라. 내용
 - ※ 교육일차별 강의주제, 강사진, 시간 등을 일정표 형식으로 기재

3. 신청안내

- 가. 신청기간 : 20○○. 2. 1.(월) ~ 2. 27.(금) 18 : 00시까지
- 나.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서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제출
 - * 홈페이지(수행기관 홈페이지, <http://www.broso.or.kr>), 전자우편(test@broso.or.kr), 팩스(02-1234-1234)
- 다. 문의 : ○○기관명 ○○팀 ○○○ / 전화 : 02-123-1234 직통 : 02-123-1234
 - ※ ○○(기관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보건복지부와 ○○(자치체명)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3)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통지

가) 자격 기준 확인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동시 지원 가능)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 발달장애 의심 참여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치료센터 등의 소견서 증명
- 기타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과정상 교육이 필요한 자

나) 제출 서류 확인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서식 6]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6-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재직증명서 등(관련분야 종사자 확인용)
- 기타(필요시) :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참고 ▶ 발달장애인 정의

☞ 발달장애인이란

- 가.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나.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지원 대상 선정

- 수행기관(지역센터, 사업선정기관)은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 서비스 지급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신청자가 많은 경우 필요시 적용)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를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1)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 (2) 차상위 계층
 -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 (3)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4)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5) 전년도에 해당 부모교육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

주의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정
- * 해당연도 부모교육 1회 참여가 원칙. 단, 지역센터와 수행기관의 판단 하에 부모교육 재참여의 필요성이 있는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는 1회 추가로 참여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동시 지원 가능)은 서비스 지급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시 보호자 및 가족 중 한명만 선택하여 지원함
- (6) 가족 중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한명만 선택

라) 대상자 통보

- 수행기관은 교육 시행 7일 전까지 지원 대상 여부를 참여자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

- 사업 수행기관은 필요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지역센터와 함께 대상자를 선정하여 다수의 이용자에서 서비스가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
- 지역센터는 각 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참여자 명단 철저 관리

유의

- 지역센터와 수행기관은 부모교육 서비스 신청자 대상으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공공후견지원 등의 관련 서비스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

4) 교육 과정 운영

※ 참고 : 3. 교육과정 운영

5) 예산 집행 및 정산

가) 일반원칙

-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통해서 관리
-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내부결재 득할 것)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 지출내역 6하 원칙에 맞추어 기재
- 물품구매(10만원 이상), 공사(50만원 이상), 기타(10만원 이상)의 경우 비교견적서(1개 이상)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내부품의 후 지출
- 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3만원 이상 지출시 간이영수증 증빙 금지)

나) 국고보조금 교부

주의

- 수행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나라도움)을 통해 모든 교부 및 집행, 정산 업무를 숙지하여 업무 처리를 진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www.gosims.go.kr
 - 관리단 : 사용자지원센터 1670-9595
 - (회원가입, 정보수정, 국고보조금 집행, 정산 등 관련 문의)



● 국고보조금 교부 과정



- 수행기관은 선정 후 1개월 이내 e나라도움을 통해 지역센터에 국고보조금을 신청
-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행위 등 모든 업무 처리
- 정부,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위탁기관에 예치
 -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가 위탁기관에 보조금을 예치하고,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각각의 지출행위시마다 실시간으로 검증한 후 지출행위를 승인하여 거래처 등으로 이체 완료 및 온라인 정산 등

다) 예산 집행

- 수행기관은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간 내 집행 가능
- 예산 집행 기준

주의

● 지역센터는 시·도가 교부한 총 부모교육 사업예산(영유아기, 진로상담, 성인권 포함)의 최대 15% 이내 부모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로 편성 가능
 단, 지역센터가 부모교육 사업을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은 불가하고, 돌보미, 행사 단기 인력 비용, 강사비 등의 사업비는 집행 가능)

● 보조사업 수행기관 내 업무담당자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총 사업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건비 지원을 받은 인력이 아동돌보미, 행사 단기 인력, 강사로 지원하더라도 별도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

● 선정 수행기관의 동일 법인·기관 내 업무종사자 행사 단기 인력지원, 돌보미로 프로그램 참여시 평일 근무시간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시간 외, 주말·공휴일은 예외적으로 비용지급이 가능함. 강사로 프로그램 참여시에도 비용지급이 가능하나, 강사비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에 이력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해당 내용을 승인받아야 함

※ 지역센터 직원 대상 강사비 지급 불가

- 돌보미(유급자원봉사자 포함) 수당지급 : 시간당 9,160원(당해년도 최저 임금 기준)
- 돌보미가 활동지원사일 경우 활동보조서비스와 연계 가능, 활동보조 이용시간은 부모교육지원 사업 예산에서 지출 불가(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남아 있을 경우는 먼저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소진됐을 때 돌봄서비스 이용을 권장함)

●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보상 등

- 수행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간의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일 경우 위탁기관 지정 철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된 위탁기관 및 위탁기관 담당자는 2년간 수행기관 지정 및 사업 담당인력 참여 금지

6) 결과보고

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참여만족도 설문 [붙임 3]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참여만족도 설문지
- 조사주체 : 사업 수행기관
- 조사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서비스 이용자
- 조사횟수 : 1회
- 조사방법 : 서면 조사
- 조사내용 : 서비스 이용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나) 결과보고

- 보고내용
 - 이용자 현황, 프로그램 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사업 추진 실적
 - 부모교육 사업비, 돌보미 수당, 관리비 등 예산집행실적 및 집행률
- 보고시기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역센터에 보고
 - 지역센터는 취합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특별자치시·도)에 보고
 - ※ 지역센터는 사업결과 자료를 중앙센터에 필히 공유

다) 예산 반납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국고 및 지방비 잔액 반납 처리
 -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영수증 사본 등은 필히 보관



마.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사고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 강화
 -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전환기 진로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의 안전장치(여행 시 여행자 보험 등)를 마련하여 실시
 - 현장체험 참여자 및 돌보미 활동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철저
 -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사항에 관한 교육 철저
- 발달장애인 및 돌보미에 대한 배상·상해보험 가입
 - 발달장애인 및 돌보미의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상해 보험 및 돌보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바. 사고보고 체계의 확립

- 사업 수행기관의 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전담인력, 부모, 가족, 돌보미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식 8]에 의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기관의 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9]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역센터로 보고하고, 지역센터는 중앙센터와 사고 상황을 공유하여야 하며 시·도 사업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 시·도는 중대사고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통계 관리

3 | 교육 과정 운영

가. 프로그램 개요

1) 개요

| 사업구분 | 참가대상 | 발달장애인 참여 | 특징 | 운영 주체 |
|--------------------------|--|----------|---|-----------|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 참여 (필요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 부모교육과정 운영 • 문화활동, 자조모임 지원 | 수행기관 지역센터 |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 참여 (필요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직무체험, 사업체 견학 • 특강, 멘토링, 박람회, 진로 페스티벌, 자조모임 등 | |
| 성인권 교육지원 |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형제, 자매 등), 관련분야 종사자 등 |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형, 강의형, 토론형, 사례 연구형 교육제공 | |

주의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유형(현장체험형, 멘토형)을 통합하여 운영 가능. 단, 현장체험형 프로그램에는 발달장애인이 함께 필수 참석(돌보미 지원)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유형 중 자조모임형은 선택하여 운영 가능 (필수 사항 아님).
※ 사업운영은 지역센터가 선정한 부모교육지원 수행기관이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역센터에서도 부모교육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음



2) 공통 운영사항

- 프로그램 사전, 사후 진행
 - 사전답사, 사후정산 방문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기획
 - 프로그램 강사섭외, 프로그램 진행 전문가 확보 등을 통한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
 - 이동 경로에서 위험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등 기초안전교육과 대책을 수립하여 프로그램 운영
 -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운영 계획에 따른 교육 실시
 - 돌보미 및 도우미(자원봉사자)의 사전 업무 관련 교육 실시
- 프로그램 실시
 -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맞게 프로그램만을 진행하는 담당자, 돌보미(또는 유/무급 자원봉사자), 담당자, 현장체험도우미 담당자, 안전 담당자, 부모교육과정 강사 등 각각 지정된 업무를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안전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
 - 현장체험 진행 담당자, 돌보미 담당자, 도우미 담당자, 안전 담당자 등은 당일 일정의 문제점을 확인 및 협의
 - 사업에 참여하는 가족, 돌보미, 자원봉사자 등 여행자 보험 가입
- 돌보미 모집 및 연계
 - 돌보미 자격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하 양육지원사업)의 장애아 돌보미 자격자
 - * 양육지원사업의 돌보미 신분증 소지자
 - * 돌보미 신분증 발행기관에 신청일 당시 돌보미 자격 확인
 - 사업 참여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100시간 이상인 자
 - 필요 시 (유/무급)자원봉사자로 대체가능하며, 행사 지원 인력으로 활용 가능
 - 돌보미(유급자원봉사자) 수당지급
 -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사업' 동일기준 적용 : 시간당 9,160원(당해년도 최저 임금 기준)
 - 돌보미가 활동보조인일 경우 활동보조서비스와 연계 가능
 - * 활동보조 이용시간은 부모교육지원사업 지출 불가. 단, 활동보조이용시간 초과 시 사업비로 지급 가능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참여중인 돌보미인 경우 부모교육지원사업과 동시간 활동하여 수당 지급 불가능

- 돌보미 연계 및 지원

- 수행기관이 부모교육 프로그램 계획에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방안을 수립
- 발달장애인 가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가족의 돌봄 역할을 도우미가 수행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진행 중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돌봄 인력을 통하여 돌봄프로그램 운영 가능(비장애 형제 자매 포함)

3) 홍보

주의

-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지원은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됨을 적극적으로 홍보
 - 보도자료 배포, 수혜자에 공지, 지급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명시하는 방안 등 활용
 - 사업계획, 보도자료, 사업설명서, 집행실적 등 사업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공지 후 기획재정부에 자료 제출
 - * 제출 자료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 및 Facebook(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에 공지 예정

● 시·도(특별자치시·도)

- 안내문 등 기타 홍보 유인물 자체 제작 배포
-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
- 시·군·구별 각종 주민 행사, 이·통장회의 등 활용

● 사업 수행기관

- 서비스 대상 및 제공인력 모집을 위한 홍보 실시
- 전단지, 현수막, 신문(생활정보지) 광고, 웹자보(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서비스에 대한 홍보
- 모집 기간 확대 및 모집 인원을 충분히 확보
- 정신보건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 적극 발굴
- 장애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는 등 서비스 대상자 적극 발굴

● 유관기관 협조

- 어린이집, 학교, 부모회,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근로작업장 등 서비스 대상자 홍보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 팩스, 이메일,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서비스에 대한 홍보



나.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 서비스 내용

- 자녀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운영
 - ① 기본형 : 부모교육 확산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기 발달장애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
 - ② 자율형 : 부모의 특수한 교육 수요 및 지역별 접근성의 문제로 기본형 교육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부모교육 대상자들을 위하여 신청기관의 특화된 장점이 반영된 여가·문화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 운영
 - ③ 자조모임형 :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 간 정보공유, 상호작용, 문제 해결, 역량강화 도모하고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부모교육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의

· 자율형, 자조모임형은 수행기관의 계획에 따라 운영여부 결정(단, 기본형은 필수 운영)

● 교육 일정 및 참여 인원

- 교육 일정은 사업 수행기관이 계획한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하되, 교육유형별 최소 교육 과정 회기는 준수
 - * 기본형 교육의 경우 연중 1회 이상 실시 필수
 - ** 그 외 자율형 교육, 자조모임형 등 상·하반기 골고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함
- 발달장애인 2명당 1명의 돌보미(유/무급 자원봉사자 가능) 지원 가능
 - * 필요시 돌보미 추가 배정 가능(단, 시·도와 사전 협의 필요)

● 교육 지역

- 전국에서 부모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대상자 심사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 필요

● 교육 장소

- 교육 장소의 제한은 없으나, 부모교육 시 발달장애인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돌봄 공간 마련 필요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프로그램 유형】

| 교육유형 | 교육 내용 등 | 인원 |
|----------------------|--|---------------------|
| 기본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과정 최소 6회기 이상(회당 2시간) • 영유아기 발달장애 자녀의 특성 및 참가자 부모의 교육 욕구에 따른 교육 과정 운영 | 과정별 10명이상 |
| 자율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주제 및 지역에 맞는 심층 교육 • 교육 과정 최소 6회기 이상(시간 및 방식 자율) • 기본형 교육과 연계된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구성 • 참가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조모임 형성 지원 | 과정별 5~10명 내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부모교육 지원 • 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기본형 교육 등 충족되기 어려운 부모교육 대상 •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방문 시 최소 1시간 이상 교육 진행 • 가정방문 시 최소 2인 이상 동행 원칙(담당자 또는 강사포함) | 과정별 1가정 이상 |
| 자조모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이 부모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부모교육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최소 5회 ~ 최대 10회기(회기당 2시간 이상 활동 필수) • 활동보고서 확인 후, 참여인원당 2만원까지 지원(강사비 등은 실비지원) | 자조모임별 최소 5명~ 10명 이내 |

● 자조모임형 교육

- (회기) 최소 5회기 ~ 최대 10회기내에서 예산상황에 따라 정함
- (지원비) 회기별 참여인원 당 최대 2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체험활동비(실비)나 강사비 (강사비기준에 따름)는 별도 지원함
 - 단, 지역센터는 예산상황에 따라 자조모임당 최대 지원금액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시에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신청 및 보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조모임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향후 활동계획이 도중에 변경되더라도 최대 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음
 -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조모임은 매 회기가 끝나고 2주 내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활동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회기에 대해서는 지원비 지급 불가
 - * 지출증빙 등이 미흡한 경우, 활동보고서 보안을 요청할 수 있음
- (활동내용) 상담 및 교육 관련 내용은 총 회기 중 30% 이상 진행해야 함

참고 ▶ 영유아기 부모교육과정 매뉴얼 개요표(보건복지부, '16년)붙임 3]

예 ▶ 영유아기 부모교육 기본형(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예시)

* 기본형(생애주기별 영유아기) / 출처 : 2017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사업계획서

| 회기 | 시간 | 주제명(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
| 1 | 3 | 오리엔테이션 | • 오리엔테이션 및 장애인권감수성교육 | 참여형 |
| 2 | 3 | 발달장애유아 조기개입 | • 발달지체유아의 조기 진단 • 발달지체의 개념에 의한 조기중재 • 발달지체의 개념에 의한 중재 기관 선정 | 강의형 |
| 3 | 3 | 영·유아기의 발달 특성 | • 신체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특성 | 강의형 |
| 4 | 3 | 발달장애 영·유아의 양육·돌봄 | • 장애부모 자녀양육기술 교육 • 발달장애 영·유아의 신변처리 지도 | 강의형 |
| 5 | 3 | 발달장애유아의 교육 | •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이해 - 보육 지원체계의 이해 | 강의형 |
| 6 | 3 | 발달장애유아 가정지도 | • 발달장애 자녀와의 사회 적응 | 참여형 |
| 7 | 3 | 부모-유아 상호작용 기술 | •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 참여형 |
| 8 | 3 | 지역사회 서비스 활용 | • 지역 이용가능 서비스 정보 제공 | 강의형 |
| 9 | 3 |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및 대처 | • 안전·실종·응급 상황 대처 | 강의형 |
| 10 | 3 | 수료식 | • 수료식 및 사후검사 | 토론형 |

예 ▶ 영유아기 부모교육 자율형 프로그램 운영(예시)

* 자율형 :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 출처 : 2017년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회기 | 교육 프로그램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
| 1 (120분) | 발달장애와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 | • 발달장애와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강의 참여 |
| 2 (180분) |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 각 사례별 전문가 코칭 | •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 및 도전적 행동 개별계획서 양식 작성 방법 소개 | 강의 참여 |
| 3 (180분) | 도전적 행동 개별계획서 양식 안내, 각 사례별 전문가 코칭 | • 각 대상자별 배경정보, 발달 및 행동특성, 도전적 행동 등에 대한 브리핑 | 강의 참여 |
| 4 (180분) | 각 사례별 전문가 코칭, 질의응답 | • 각 대상자별 도전적 행동 영상 및 행동관찰 기록을 통해 도전적 행동 양상과 원인분석 및 중재 방법 논의 | 강의 참여 |
| 5 (180분) | 각 사례별 중재 과정에 대한 중간점검 및 피드백, 질의응답 | • 사례별 도전적 행동 중재 방법 및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전문가 피드백 • 질의응답 | 강의 참여 |

예 ▶ 영유아기 부모교육 자율형 프로그램 운영(예시)

* 자율형 : 캘리그래피 부모교육 프로그램

| 회기 | 교육 프로그램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
| 1 (120분) | 내손글씨쓰기 | • 캘리그래피 기초이론 • 글씨교정하기 | 실습 참여 |
| 2 (120분) | 다양한 글씨체쓰기 | • 다양한 펜을 활용하여 디자인해보기 • 자음을 크게, 받침을 작게, 가로선은 길게 써보기 | 실습 참여 |
| 3 (120분) | 붓펜쓰기 | • 모나미붓펜과 쿠레타케붓펜을 이용하여 써보기 | 실습 참여 |
| 4 (120분) | 캘리실제활용 | • 캘리 도일리페이퍼 활용기법 알기 • 캘리 책갈피와 선물택 만들기 | 실습 참여 |
| 5 (120분) | 캘리소품활용 | • 캘리 카드, 엽서 만들기 • 다양한 소품에 캘리써보기 | 실습 참여 |
| 6 (120분) | 스탬프활용 | • 지우개스탬프를 만들어 캘리활용하기 | 실습 참여 |
| 7 (120분) | 기법활용 | • 번지기기법 알기 • 번지기기법을 활용하여 캘리부채 만들기 | 실습 참여 |
| 8 (120분) | 명언캘리 | • 다양한 종이에 명언쓰기 | 실습 참여 |

참고 ▶ '책 읽는 부모 아카데미' 부모교육과정(북스타트코리아, '18년)

* 북스타트 프로그램 :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취지의 세계적인 영유아 책 읽기 장려 프로그램

| 회기 | 교육 프로그램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
| 1 (60분) | 지능정보시대와 진로 | • 비경쟁 독서토론 • 인문독서와 실용독서 | 강의 참여 |
| 2 (60분) | 그림책으로 시작하자 | • 그림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그림책에 들어있는 철학 | 강의 참여 |
| 3 (60분) | 나는 생각하는가 | • 연민을 넘어 공감으로 | 강의 참여 |
| 4 (60분) | 도서관에서 큰 아이 | • 아이와 부모 책읽기 • 아이를 위한 그림책, 어른을 위한 그림책 | 강의 참여 |
| 5 (60분) |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문적 성찰 • 인문학이 밥이다 | 강의 참여 |
| 6 (60분) | 뇌과학이 알려준 새로운 생각 | • 일기와 뇌 발달 | 강의 참여 |
| 7 (60분) | 로봇시대, 인간의 일 | • 사라지는 직업들, 생겨나는 직업들 • 인문학으로 진로 찾기 | 강의 참여 |
| 8 (60분) |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 • 북스타트 소개 • 북스타트 활성화 사례 | 강의 참여 |



다.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 서비스 내용
 -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고용으로, 학교로의 성인기 전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상담 및 코칭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돕고자 함
 - 진로체험활동, 멘토링, 강연, 박람회 개최 등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운영 가능
 - 수행기관이 체험처를 발굴하고 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일정, 장소, 구체적인 활동, 도우미 지원 등을 계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시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유형】

| 교육유형 | 교육 내용 등 | 비고 |
|-------|---|---------------------|
| 현장체험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진학 관련 학과, 발달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 견학, 직업체험 형식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 (예시) 대학견학(한국복지대학, 호산나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업훈련센터의 직업모의체험 등 | |
| 멘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 특강(대화식 콘서트), 진로체험 박람회, 페스티벌 등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설계 기회 제공 • (예시) 발달장애인 직장인의 특장을 통한 해당 직업의 이해/ 취업자 인터뷰 영상 시청/ 발달장애인 대학생 멘토링 등 | |
| 자조모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이 부모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부모교육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최소 5회 ~ 최대 10회(회기당 2시간 이상 활동 필수) • 활동보고서 확인 후, 참여인원당 2만원까지 지원(강사비 등은 실비지원) | 자조모임별 최소 5명~ 10명 이내 |

- 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인원
 - 프로그램 일정은 당일로만 운영가능
 - 휴식지원사업과 유사 중복되어, 숙박형(1박 이상)의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없음
 - 발달장애인 2명당 1명의 돌보미(유급 자원봉사자 가능) 지원 원칙
 - * 필요시에 돌보미 추가배정 가능(단, 시·도와 사전 협의 필요)
- 프로그램 장소
 - 현장체험형은 지역사회 기관 및 시설을 이용 기반으로 권장하되, 지역 외 기관도 이용 가능
 - 수행기관 담당자는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장소를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신규 체험처를 발굴하며, 체험처의 신규 진입과 이탈 등의 변동사항을 정기 점검 기록함
 - 멘토형은 강연이나 특강, 박람회 장소로 적합한 위치와 환경을 고려해 선정

- 자조모임형 교육
 - (회기) 최소 5회기 ~ 최대 10회기내에서 예산상황에 따라 정함
 - (지원비) 회기별 참여인원 당 최대 2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체험활동비(실비)나 강사비(강사비기준에 따름)는 별도 지원함
 - 단, 지역센터는 예산상황에 따라 자조모임당 최대 지원금액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시에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신청 및 보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조모임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향후 활동계획이 도중에 변경되더라도 최대 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음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조모임은 매 회기가 끝나고 2주 내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활동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회기에 대해서는 지원비 지급 불가
 - * 지출증빙 등이 미흡한 경우, 활동보고서 보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활동내용)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련된 교육 내용을 총 회기 중 30% 이상 진행해야 함

예 ▶ 성인전환기 현장체험형 프로그램 일정표(예시)

*** 자율형 : 캘리그라피 부모교육 프로그램**

| 구분 | 주요내용 | 예시 |
|--------------|--------------------|--|
| 사전답사 (D-7) | 체험처를 방문 전에 사전답사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처 관계자에게 방문취지를 설명하고 사전답사 협조요청 - 진로체험활동에 적합한 장소인지, 위험요소는 없는지 등을 사전답사 시 안전점검 확인 - 장애인 이동편의사실과 동선, 화장실 등을 점검 |
| 오리엔테이션 (50분) | 체험처에 대한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업무담당자 소개 - 참석자 인사 및 교류 - 체험 일정 및 주의사항 전달(안전수칙 등) - 체험처 간략 소개 |
| 진로체험활동 (4시간) | 체험장소별 진로체험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장소로 이동 - 체험장소별 진로체험활동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1) 직업훈련센터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실습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분류 : 의류진열 및 전시, 태그부착, 재고관리 등 • 그 외 우체국, 도서관 사서, 제과, 바리스타 등 (예시2) 한국복지대학교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대학생 멘토와의 대화 • 학과 사무실, 강의실,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라운딩 |
| 마무리 (10분) | 체험활동 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설문조사 - 마무리 인사 |



- 주체별 역할
 - (지역센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기획을 컨설팅하며, 수행기관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 필요시 자체 체험프로그램 운영, 수행기관 모니터링 실시
 - (수행기관) 진로체험 계획 수립, 수요조사, 체험처 발굴, 체험처 답사 및 사전 협의 등 진로체험을 기획하고 운영, 모니터링 실시
- 진로체험 지역사회 협력 기관
 - 지역협력기관은 체험처 발굴·관리, 인력 발굴·관리 등 진로체험 담당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됨
 - 지역 학습 생태계에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위해 필요
 -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포괄하는 다양하고 확장된 체험학습 공간이 요구됨
 - 지역사회 협력은 인적교류, 사업연계·협력, 정보공유, 공간 교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형성 가능

【성인권 교육지원 프로그램 유형】

| 교육유형 | 교육 내용 등 | 인원 | 발달장애인 당사자 참여 |
|--------|--|-------------|--------------|
| 상담형 교육 | • 발달장애인 가족 상고충 사례에 대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을 소그룹 형태로 실시 | 소수정예 10인 이내 | 선택 참여 |
| 강의형 교육 | •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 강사를 통해 인간의 성, 발달장애인, 가정 내 성교육 등의 영역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 강좌당 20명 내외 | 선택 참여 |
| 토론형 교육 | • 소그룹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성권과 관련된 특정 주제 및 사회 이슈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 강좌당 10명 내외 | 선택 참여 |
| 사례연구형 | • 발달장애인 부모들로 구성된 소그룹 구성원들이 실제 사례에 대한 컨퍼런스를 진행하여, 사례 대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 강좌당 10명 내외 | 참여 불가 |

※ 교육유형은 여러 형태가 접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라. 성인권 교육지원

- 서비스 내용
 - 성인권 교육 수행기관에서는 교육의 운영방법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
 - 성인권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기관은 강사와 사전 협의하여 강의계획서 작성
 -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한 교육을 실시
 -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 내 성인권 교육 참여 강사 리스트 첨부
 - 성인 발달장애인 및 부모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교육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되, **강의형 교육 프로그램은 최소 4회기 이상으로 구성**
 - 수행기관은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 참여자의 수, 섭외 강사의 전문성, 기관 여건 및 지역상황 등 현실성에 부합하는 교육방법 선택 가능
 - 상·하반기 골고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

- 강사 기준
 - **성폭력 상담원 혹은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중 아래 기준을 한 가지 이상 갖춘 자**
 -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성교육 관련 2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 교육 일정
 - 교육 일정은 사업 수행기관이 계획한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
 - 교육 참여 부모가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평일 저녁 또는 주말 일정도 고려 가능
- 교육 장소
 - 별도의 장소제한은 없으나 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및 휴게공간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그 외 교통 편의성, 주변 환경, 시설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보호하고 도전적 행동 및 돌발행동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인근에 마련하고, 해당 공간에 발달장애인 2명당 1명의 돌봄인력 배치(유급 자원봉사자 가능) 필요
 - * 필요시에 돌보미 추가 배정 가능 (단, 시·도와 협의 필요)
 - 성인권 교육진행시간 동안 휴게공간에서 대기 중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여가활동 프로그램이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병행 진행 권장



- 교육 참여 인원 및 교육 참여자 선정
 - 교육 참여 인원은 수행기관의 추진 교육유형에 따라 결정
 - 발달장애인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교육 참여가 가능하나,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① 성(性)과 관련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 ② 학교 등에서 성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성인 발달 장애인(만 18세 이상) 또는 그 보호자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외에는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04. 발달장애인부모교육지원 '다'지원 대상 선정'을 참고

예 ▶ 2022년 성인권 교육 일정표(예시)

| 회기 | 영역 | 교육 프로그램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
| 1 | 인간의 성 | 인간 성의 특성 | 목표 인간의 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의 세 가지 의미와 가치 • 인간 성의 특성 • 성에 대한 태도(성윤리와 성가치) 평가 인간의 성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었는가? | 강의형 토론형 |
| 2 | 발달 장애인 |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성적 발달 | 목표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성적 발달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킨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의 사고 특성 • 발달장애인의 감각 특성 •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심리-성적 발달 평가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성적 발달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는가? | 강의형 토론형 |
| 3 |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 | 목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술 •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과 바운더리 • 대인관계에서의 성폭력 평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는가? | 강의형 토론형 |
| 4 | 가정내 성교육 | 성에 대해 의사소통 하는 방법 | 목표 발달장애인과 성에 대해 의사소통 하는 방법적 지식을 획득한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행대화와 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 상황 속에서 가르치기 • 주 양육자의 역할 평가 가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성교육하기 위한 방법적 지식을 획득하였는가? | 강의형 토론형 |

서식자료

04

부모교육지원

- 1. 2000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예시) 333
- 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335
- 3.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 336
 - [붙임 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계획서 337
 - [붙임 2] 2000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 341
- 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통보서 342
- 5.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보고 343
- 6.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신청서 344
- 6-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45
- 7.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결과보고서 347
- 8. 응급처치 동의서 356
- 9. 사고보고서 357
- 10. 자조모임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동계획서 359
- 11. 자조모임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동보고서 361
- 참고 1. 사업 세부예산 산출 내역 작성 기준 등 362
- 참고 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매뉴얼(생애주기별 기본형) 366



[붙임 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계획서

※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에 표시하세요.)

영유아기 부모교육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성인권교육

| | | | |
|----------------|---|---------------|---|
| 프로그램 명 | 2000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000(프로그램명) | | |
| 사업유형 |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기 부모교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본형 <input type="checkbox"/> 자율형 <input type="checkbox"/> 자조모임형) <input type="checkbox"/>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장체험형 <input type="checkbox"/> 멘토형 <input type="checkbox"/> 자조모임형) <input type="checkbox"/> 성인권교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담형 <input type="checkbox"/> 강의형 <input type="checkbox"/> 토론형 <input type="checkbox"/> 사례연구형) | | |
| 목적 | 발달장애자녀를 둔 가족과 당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전문정보 및 양육기술 제공 | | |
| 일정 |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기 부모교육 : 2000. 4. 5.(금) ~ 8. 31.(토) <input type="checkbox"/>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 2000. 4. 5.(금) ~ 8. 31.(토) <input type="checkbox"/> 성인권교육 | | |
| 장소 |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기 부모교육 : 서울시 성북구, 강북구 2개 지역 <input type="checkbox"/>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 한국잡월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nput type="checkbox"/> 성인권교육 | | |
| 참여대상 | <input type="checkbox"/> 영유아기 부모교육 :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30명 <input type="checkbox"/>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 가정 50명 대상 <input type="checkbox"/> 성인권교육 | | |
| 참여인원 | 영유아기 부모교육 | 총 인원 : 명 | • 부모(보호자) : 30 명 • 발달 장애인 : 9 명 • 업무 종사자 : 13 명 |
|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 총 인원 : 명 | • 부모(보호자) : 50 명 • 발달 장애인 : 9 명 • 업무 종사자 : 13 명 |
| | 성인권 교육 | 총 인원 : 명 | • 부모(보호자) : 50 명 • 발달 장애인 : 9 명 • 업무 종사자 : 13 명 |
| 주요 프로그램 | 1) 영유아기 프로그램 : 자녀양육기술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2)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 바리스타 체험 프로그램 3) 성인권 교육 운영 | | |

년 월 일

000 기관

- 첨부 1. 프로그램 운영(영유아기 부모교육,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성인권 교육) 일정표
 2. 프로그램 운영(영유아기 부모교육,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성인권 교육) 예산서
 3. 성인권 교육 참여 강사 명단(성인권 교육 운영 시)

첨부 1. 프로그램 일정표

① 영유아기 부모교육/ 성인권교육 일정표

| • 프로그램명 : • 교육대상자 : • 교육 일시 및 장소 | | | | | | |
|--|----|----|----------------|------|------|-----|
| 회기 | 일시 | 시간 | 주제명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강사명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②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현장체험형) 일정표

| • 프로그램명 : • 교육대상자 : • 교육 일시 및 장소 | |
|--|---------------|
| 시간 | 프로그램 |
| 09:30~11:00 | 체험처 도착 |
| 11:00~12:00 | 오리엔테이션 |
| 12:00~14:00 | 점심식사 |
| 14:00~18:00 | 체험장소별 진로체험 활동 |
| 18:10 | 체험활동 정리 |

※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양식 수정사용



첨부 2. 예산서

| 보조 비목 | 보조세목 | 세부내역 | 산출근거 | 금액(원) | 비율 (%)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인건비 | | | |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사무용품 구입비 | | | |
| | | 인쇄비 및 유인물비 | | | |
| |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 |
| | | 간행물 등 구입비 | | | |
| | | 각종 회의비 | | | |
| | | 전문가 활용비(강사로)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공공요금 | 2,500원 × 40명 | | |
| | | 여행자 보험 | | | |
| | 임차료 (07) | 장소 대관료 | 300,000원 × 2(A/B) | | |
| | | 버스 임차료 | 45인승 1대 | | |
| | 기타운영비 (16) | 강사교통비 | | | |
| 교육진행비 | | 돌보미, 행사단기인력 0인 × 00원 | | | |
| 체험비 | |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포함) 0원 × 0명 | | | |
| 임장료 | | | | | |
| 식사비 | | | |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출장여비 | | |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간담회, 기타 행사 경비 | | | |
| 예비비 | 예비비 | | | | |
| 총계 | | | | | |

* 산출예산은 참조하여 작성하되, 인건비는 총 사업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예비비는 사업 수행 중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

첨부 3. 성인권 교육 수행 강사 명단

| 연번 | 성명 | 소속 | 장애인복지분야 경력(월) | 발달장애인 대상 강의경력(월) | 성인권교육 관련 보유 자격 |
|-----|-----|-------|------------------|---------------------|------------------------|
| 1 | 명도일 | 00복지관 | 23 | 35 | 양평원 폭력예방 전문강사 |
| 2 | 이대진 | 프리랜서 | 4 | 23 | 00성문화센터 장애인 성교육강사과정 |
| 3 | | | | | |
| 4 | | | | | |
| ... | | | | | |

* 수행기관은 강사의 경력 및 자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붙임 2]

2000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 영역 | 평가항목 | 설명 | 배점 | 평가 |
|---------------|--|--|-----|----|
| 수행기관 적합성 (15) | 1. 사업추진을 위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및 인력은 적합한가? | 사업 운영 방면에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및 인력은 p. 310의 사업 개요-사업 수행기관 기준에 부합하는가? | 10 | |
| | 2.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 서비스 제공 실적에 관련사업 추진실적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가? | 5 | |
| | 3. 사업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고 목표 설정이 구체적인가? | 운영 목표에 부모교육지원사업 목표 및 목표인원을 포함하고 있는가? | 5 | |
| 사업계획 타당성 (70) | 4. 사업 수행 추진체계가 합리적인가? | 수행하는 각 체계의 역할 분담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지자체-지역센터-수행기관 및 기타 자원) | 5 | |
| | 5. 사업내용이 요구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대상 인원 및 회기 구성, 교육 방향은 성인권 교육 사업에 부합하는가? | 10 | |
| | 6. 생애주기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은 명확하고 타당한가?(지역선정 타당성, 대상자 욕구 분석 등) | 예산 운영 방면에 지역 및 대상자 선정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가? - 지역선정 타당성, 대상자 욕구분석 등 | 15 | |
| | 7. 부모교육 미 실시 지역으로 교육 실시 계획이 있는가? | 서비스 제공 실적, 사업 운영 방안, 서비스 제공 방안 등에 기존 실시 지역 및 미 실시 지역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 5 | |
| | 8. 부모교육지원 사업 운영 계획은 명확하고 타당한가? | 서비스 제공 방면에 대상, 일정 등이 기술되어 있는가? | 5 | |
| | 9. 교육 대상자 만족도 조사 계획은 명확하고 타당한가? | 서비스 관리 계획에 만족도 조사 시기,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는가? | 5 | |
| | 10. 사업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추진 인력은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운영계획서 내에 사업 추진인력이 충분히 구성되어 있는가? (슈퍼바이저, 담당자, 기타 지원인력 등) | 5 | |
| | 11. 사업 홍보를 위한 추진 계획은 적합한가? | 서비스 제공 방면에 사업 홍보 계획이 기술되어 있는가? | 5 | |
| | 12.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계획은 타당한가? | 사업 운영 방면에 기타 자원으로서의 유관기관에 대한 활용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가? | 5 | |
| | 13. 사업내용 및 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서비스 제공 방면에 교육 일정이 수행일정 중 하반기에 치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 5 | |
| 예산계획 타당성 (15) | 14. 사업비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가? | 예산 운영 방면에 산출 근거는 명확한가? 기관 운영비 명목에 지나치게 많이 배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10 | |
| | 15. 사업추진을 위한 자부담 계획 및 조달이 가능한가? | 예산 운영 방면에 자부담 계획되어 있는가? 혹은, 기관 규모가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 규모인가? | 5 | |
| 합 계 | | | 100 | |

심사위원: (인)

참고

• 부모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지역센터의 경우, 위의 선정 심사표와 시·도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 심사표를 조정 가능

참고 1 사업 세부예산 산출 내역 작성 기준 등

1. e나라도움 사용 대상

가. 민간보조사업

- 중앙관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직접 집행하는 모든 민간보조 사업자(상위보조사업자)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아 집행하는 하위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
 - 사용 대상 보조사업 : 개별 사업마다 시스템 사용 대상을 민간보조사업자 유형별로 모두 열거하여 추가하면 됨

2.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가. (1단계) 사전 검증

- 수급자 자격 검증, 중복 수급자 체크, 부정수급 이력 및 국제청 체납 등을 사전 검증 작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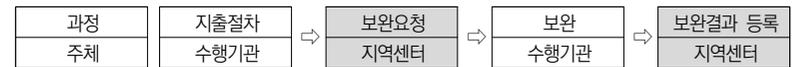
나. (2단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 모든 보조사업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국고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다. (3단계) 집행·사후 검증

- 국제청,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하여 허위 증빙서류를 적발
- 이종 취업자의 중복 정산이나 허위 근로자 여부 검증
- 집행 증빙의 진위 여부, 중복 사용 등을 자동 검증, 미사용 보조금 및 이차 발생분 확인 등을 집행 후에 검증

참고 ▶ 집행과정별 관리주체



3.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 모든 민간보조사업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조치
 -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등 모든 업무처리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이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을 활용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모든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방안 등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과 협의하여 자체 교육 실시도 가능
 - *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의 전문강사가 전담
-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사용자 교육계획을 별도 통보할 경우 적극 참여



2. 세부예산 산출 내역 작성 기준

-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내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내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을 근거로 2000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예산항목으로 재편성함
- 가급적 본 서식에 맞게 세부예산을 책정하고, 보조세목 별 내역과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내역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시 인력 비용 지원(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아동 돌보미, 행사 지원 인력 |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품,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교육자료, 만족도 및 평가 설문조사 등 출력비 |
| | |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 | | 4.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
| | | 5.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교육 강사료 지급 - 업무 관련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평가 및 자문회의비 등 |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등 회선 사용료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 | | 2. 제세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 | 임차료 (07) | 1.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2.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3.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4.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5.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
| | 유류비 등 (08) |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
| | 차량비 등 (10) |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업 |
| 기타운영비 (16) | 1.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교육 강사 교통비(영복 실비 기준) - 교육용 다과비 - 아동돌보미, 행사지원 인력 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행사 경비 등 |

3. 세부예산 집행 기준

주의

- 인건비 책정시 당해 연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급/월급 산출하되, 전체 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인쇄비, 회의자료, 문헌복사(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참조)

□ 일반수용비 집행 산출 단가

가) 강사료 등 사례비 지급기준

- ※ 교육 강사료는 아래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사업정산 시 강사의 자격기준 증명서류 증빙 필요(필수)
- ※ 강의시간은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구분 | 지급기준 | | | 비고 |
|-------|--|--|-------|---------|
| | 지급대상 | 지급단가 | 상한액 | |
| 1급 | (공공부문) 장관급 이상 공무원 | 기본 : 400천원/시간 추가 : 300천원/시간 | 600천원 | *원고료 포함 |
| | (민간부문)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 설치주체가 인정하는 자 | 기본 : 400천원/시간 추가 : 300천원/시간 | - | |
| 2급 | (공공부문) 차관급 이상 공무원, 정부(자치체) 투자출연기관장,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 기본1시간 : 300천원/시간 추가1시간부터 : 200천원/시간 | 600천원 | |
| | (대학교수/언론인) 대학 총장이상, 언론사 대표(중앙 언론 이상) | 기본1시간 : 300천원/시간 추가1시간부터 : 200천원/시간 | - | |
| 3급 | (민간부문) 상장기업 대표 이상(1,000인 이상) | 기본1시간 : 300천원/시간 추가1시간부터 : 200천원/시간 | - | |
| | (공공부문) 4급 이상 공무원, 정부(자치체) 투자출연기관 임원 이상 | 기본1시간 : 250천원/시간 추가1시간부터 : 150천원/시간 | 600천원 | |
| 4급 | (대학교수/언론인) 부교수 이상, 언론인(10년 이상), 대학 병원 및 공공의료원 소속의 의사 | 기본1시간 : 250천원/시간 추가1시간부터 : 150천원/시간 | - | |
| | (민간부문) 국가전문자격(변호사, 의사, 약사 등)을 소지하고 있는 자, 민간분야에서 강의주제와 관련하여 10년 상당의 경력 소지자 | 기본1시간 : 250천원/시간 추가1시간부터 : 150천원/시간 | - | |
| 5급 | (공공부문) 5급 이하 공무원, 정부(자치체) 투자출연기관 직원 | 기본1시간 : 180천원/시간 추가1시간부터 : 100천원/시간 | 600천원 | |
| | (대학교수/언론인) 조교수 이하, 언론종사자 | 기본1시간 : 180천원/시간 추가1시간부터 : 100천원/시간 | - | |
| 보조 강사 | (민간부문) 경력 10년 미만의 실무자 | 기본1시간 : 180천원/시간 추가1시간부터 : 100천원/시간 | - | |
| |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DHP·차트) 조작은 제외 | 기본1시간 : 50천원/시간 추가1시간부터 : 50천원/시간 | - | |

참고

- 2019년부터 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금액
- 기타소득세 : 8%, 지방소득세(주민세) : 기타소득세의 10%



나) 원고료 기준

- 적용대상 : 강사로 등 사례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강사로 지급이 되지 않는 자
- 적용범위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 산정기준 및 기준단가(사용매체 중 하나만 적용하여 지급)
- 지급기준
 - 기준매수 : 강의시간당 A4 6매분(200자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강의시간당 기준매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준매수의 150% 범위 내(45매 까지)에서 지급 가능

| 사용매체 | 산정기준 | 기준단가 |
|--------|------------------------------------|--|
| 워드프로세서 |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 • A4 용지 1면(20,000원) • 200자 원고지 1매 4,000원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
| 파워포인트 | 강의를 위한 슬라이드 1컷당 200자 원고지 1매로 환산 | |

다) 기타

| 예산(목) | 기준단가 |
|-----------|--|
| 공공요금 및 제세 | ○ 공공요금료 : 전화사용료(1인당 10,000원/월, 1개월 70,000원 이하), 우편요금(50,000원/월) ○ 제세 :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
| 차량비 | ○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증빙 필요(여비 중 교통비와 중복 지급 불가) |
| 기타 운영비 | ○ 교육 강사 교통비 : 실비정산(영수증 증빙 필요) ○ 교육용 다과비 : 1인당 5,000원 이내 |
| 여비 | ○ 1일 기준 :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 숙박비 :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원)(힐링캠프, 테마여행을 위한 숙박비 정산은 별도)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준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수행기관 내에서 자체편성하여 지급될 경우, 중복지급 불가 |

참고 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매뉴얼(생애주기별 기본형)

(내려받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발간자료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매뉴얼('16년)

| 과정 | 교과목 | 교육방법 |
|-------------------|-----------------------------|----------------|
| 공통형 (16회) | ◦ 장애에 대한 이해 | 강의/토론행 |
| | ◦ 발달장애 특성 | 강의/참여형 |
| | ◦ 발달장애인 관련 법령 | 강의/토론행 |
| | ◦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 강의/토론행 |
| | ◦ 부모 역할 이해 | 강의/그룹 토의 및 발표형 |
| | ◦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I | 강의/현장실습형 |
| | ◦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II | 실습연계/시청각형 |
| | ◦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대처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발달장애인 양육·돌봄 | 강의/참여/실습연계/집단형 |
| | ◦ 발달장애인 가족의 권리 옹호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적극적 권리옹호 교육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지역사회 서비스 활용 | 강의/토론행 |
| |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활용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지원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가족관계 유지 및 개선 | 강의/참여형 |
| | ◦ 가족 역량강화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영유 아기 (12회) | ◦ 영유아기 발달 특성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영유아기 장애특성 및 조기중재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발달장애유아 조기개입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발달장애유아의 교육 | 강의/실습연계형 |
| | ◦ 발달장애인의 재활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발달장애 영유아의 양육·돌봄 | 강의/참여/실습형 |
| | ◦ 부모-유아의 상호작용 기술 | 강의/참여/실천연계형 |
| | ◦ 유아기의 양육기술 | 강의/실습연계형 |
| | ◦ 발달장애유아 가정지도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영유아기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중재 | 강의/참여형 |
| | ◦ 발달장애유아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부모양육기술훈련 프로그램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과정 | 교과목 | 교육방법 |
|--------------------|----------------------------------|-------------|
| 초등 학령기 (10회) | ◦ 초등학령기 특수교육 | 강의/실습연계형 |
| | ◦ 초등학령기 지역사회 복지지원 | 강의/토론형 |
| | ◦ 초등학령기 학교에서의 적응 | 강의/참여형 |
| | ◦ 보조공학기기의 이해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발달장애인 양육·돌봄 | 강의/참여/실습형 |
| | ◦ 초등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중재 | 강의/참여형 |
| | ◦ 초등학령기 가정에서의 학습지도 | 강의/참여형 |
| | ◦ 아동기 가정에서의 성교육 실제 | 강의/시청각형 |
| | ◦ 초등학령기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지원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초등학령기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청소 년기 (9회) | ◦ 청소년기 발달장애인 진로지도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발달장애인 취업준비 | 강의/실습연계형 |
| | ◦ 청소년기 진학준비 | 강의/실습연계형 |
| | ◦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중재 | 강의/참여형 |
| |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준비 | 강의/실습연계형 |
| | ◦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정에서의 성교육 실제 | 강의/시청각형 |
| | ◦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기술 향상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지원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발달장애 청소년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스트레스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성인기 (10회) | ◦ 발달장애인의 성, 사랑, 결혼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발달장애인의 자조집단 형성 촉진 | 강의/참여형 |
| | ◦ 성인기 발달장애인 교육 | 강의/실습연계형 |
| | ◦ 성인기 발달장애인 부모 사후 대비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발달장애인의 자기권리 옹호 지원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 성인기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 강의/토론형 |
| | ◦ 노령 발달장애인 지원 | 강의/토론형 |
| | ◦ 발달장애인의 노화 | 강의/토론형 |
| | ◦ 성인기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 강의/참여/실습연계형 |
| ◦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사업 | 강의형 | |